

【NCS기반 직무기술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분 류 체 계	대분류	보건·의료
채용 분야	기술직		중분류	의료
채용 예정 인원	1명		소분류	간호
기관 소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보, 통신, 전자, 방송 및 관련 융합기술 분야의 핵심·미래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성장동력 창출 및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함			
전형 절차	서류전형 → 전공면접 → 종합면접(인성검사 포함) → 임용			
직무 수행 내용	○ 산업보건관리 - 보건계획 수립·실시 - 직원 건강 상담 및 보건교육 실시 - 건강관리실 운영 및 의료행위 - 건강진단 실시 및 사후관리 업무 - 건강증진프로그램(금연, 생활습관병 등) 운영 - 직무스트레스 등 정신건강프로그램 관리 및 상담 - 보건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 - 관련부처 요청에 따른 보건관련 자료 작성 및 대응 ○ 작업환경관리 - 사업장 유해인자 파악 및 개선 - 산업보건 위험성평가에 관한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 작업환경측정 시행 및 결과 평가 -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및 예방 대책 수립 ○ 연구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 연구원 규정(안전보건관리요령)에서 정한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에 따른 업무 등			
근무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본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일반 요건	연령, 성별	○ 연령: 무관 ○ 성별: 무관		
	기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와 연구원 규정(인사규정 제10조)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의무 대상자(남성)는 군필자, 면제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이 없는 자 ○ 임용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
교육 요건	학력	○ 무관
관련 전공	○ 산업보건, 산업위생, 간호학 등 관련 전공	
관련 경력	○ 무관	
필요 지식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지식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 정보에 관한 지식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점검 및 개선에 관한 지식	
필요 기술	○ 응급상황(CPR 등) 대처 능력 ○ 계획서 및 보고서 작성 기술 및 문서화 능력 ○ 효과적인 상담 능력 ○ 최신 보건정보 공유 및 의사소통 능력	
직무 수행 태도	○ 새로운 도전과 창의 ○ 선제적 변화 및 혁신 의지 ○ 연구협업을 위한 소통 및 협력	
직업 기초 능력	○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자원관리능력, 조직이해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직업윤리	
기타	○ 본 채용공고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을 위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과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목적기관 채용 기준」을 준수합니다. - 모집분야별 전문성과 직무적합성을 확인·검증하기 위하여 관련 기준에 따라 연구 및 직무와 관련된 학위취득기관(학교명, 전공, 학위, 학점, 지도교수명 등) 및 연구수행기관(기관명, 직위, 직무수행내용 등) 경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상기 직무는 지원자가 입사 시 수행할 대표 전문 분야의 직무이며, 입사 후 해당 직무 외 관련된 타 직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이트 : www.ncs.go.kr	

별첨

보건관리자의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별표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